

# 25기 제6회 포천노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정기회) 의 안 발 의 서

회의일시 : 2022. 12. 7.(수) 15:30

◎ 안 건

| 번호  | 안건명                                 | 구분<br>(발의자) | 비고 |
|-----|-------------------------------------|-------------|----|
| 1   | 2022학년도 학생자치회 활동운영                  | 학생자치대표      |    |
| 2   | 2022학년도 제2차추경예산안 심의안                | 교육행정실       |    |
| 3   | 2022학년도 겨울방학 중 기초학력 배움성장교실 운영 계획(안) | 교육과정부       |    |
| 4   | 2022학년도 해피노곡 스키캠프 체험학습 운영 계획(안)     | 교육과정부       |    |
| 5   | 2022학년도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 돌봄교실        |    |
| 6   | 2022 포천노곡초 학교 규칙 개정                 | 교무부         |    |
| 7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연간)운영계획 수립 심의(안)      | 방과후학교       |    |
| 8   | 2022학년도 겨울 영어캠프 운영계획(안)             | 과학·영어부      |    |
| 기타1 | 농어촌지원금 방과후학교 수용비 운영(안)              | 방과후학교       |    |

포천노곡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 2022학년도 학생자치회 활동운영

|          |   |
|----------|---|
| 안건<br>번호 | 1 |
|----------|---|

|          |                     |
|----------|---------------------|
| 제출년월일 :  | 2022년 11월 28일       |
| 제 출 자 :  | 포천노곡초등학교장<br>학생자치대표 |
| 학생자치대표 : | 6학년 김가영             |

|                |  |
|----------------|--|
| <b>1. 제안이유</b> | <p>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자치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취합하여 학생대표가 의견제시 가능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p>   |
| <b>2. 관련근거</b> | <p>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제5항 및 포천노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1조에 의거</p>  |
| <b>3. 주요내용</b> | <p>학생자치회 활동운영</p> <p>1. 10월 27일 제4회 포도송이가족모임 활동 결과<br/>포도송이 알뜰시장을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확립하며, 환경보호에 동참하자는 취지</li> <li>-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팔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는 활동.</li> <li>- 해피머니(학교 화폐)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살 수 있음.</li> <li>- 남은 해피머니로는 간식, 학용품 등을 살 수 있게 함.</li> </ul> <p>2. 11월 22일 제4회 해피노곡 라온회의 결과<br/>일년을 돌아보며,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칭찬의 상장 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 자신에게 상장 수여</li> <li>- 친구에게 상장 수여</li> </ul> <p>3. 마지막 12월 포도송이가족모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만들기 혹은 영화 관련 활동</li> </ul> <p>4. 학생자치회장으로서 일년 간의 느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회 운영에 대해 느낀 점</li> <li>- 전교회장으로서 느낀 점</li> </ul> |
| <b>4. 기타</b>   |  |
| <b>5. 붙임</b>   |  |

1. 10월 27일 제4회 포도송이가족모임 활동 결과  
포도송이 알뜰시장을 개최



1) 가족 별 판매대의 모습



3) 게임을 이기면 해피머니를 얻을 수 있음.

2. 11월 22일 제4회 해피노곡 라온회의 결과  
일년을 돌아보며,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상장 수여



**2022학년도 포천노곡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제2차추경예산안 심의(안)**

|          |   |
|----------|---|
| 안건<br>번호 | 2 |
|----------|---|

|         |               |
|---------|---------------|
| 제출년월일 : | 2022년 11월 29일 |
| 제 출 자 : | 포천노곡초등학교장     |
| 담 당 자 : | 교육행정실장        |

|                |  |
|----------------|--|
| <b>1.제안이유</b>  | -2022학년도 제1차추경예산 편성 후 배정된 목적사업비(성립전예산) 및 기타 전입금과 자체수입 등으로 예산 변경사유가 발생한 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
| <b>2.관련근거</b>  |  |
| <b>3. 주요내용</b> | -붙임파일 참조   |
| <b>4. 기 타</b>  |  |
| <b>5. 붙임</b>   | 2022학년도 포천노곡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제2차추경예산안 1부.   |

## 2022학년도 겨울방학 중 기초학력 배움성장교실 운영 계획(안)

|          |   |
|----------|---|
| 안건<br>번호 | 3 |
|----------|---|

|         |                  |
|---------|------------------|
| 제출년월일 : | 2022 년 11 월 28 일 |
| 제 출 자 : | 포천노곡초등학교장        |
| 담 당 자 : | 교육과정부장 김철        |

|                    |   |
|--------------------|---|
| <b>1.제안이유</b>      | 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구제하여 학습부진 학생의 최소화<br>나. 방학 중 소수정예제 운영으로 양질의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도<br>다. 기초부진 학생들의 자존감, 사회성 기르기  |
| <b>2.관련근거</b>      | 가. 2021-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 [정책1] 학습안전망 강화-기초학력보장<br>나. 2022 경기 교육회복 종합 지원계획 1-1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지원(교육과-4643, 2022.2.18.)  |
| <b>3.<br/>주요내용</b> | <p><b>1. 운영 개요</b></p> 가. 운영 기간 및 대상: 2022년 1월 5일(목)~2월 28일(화) 37일간/본교 1-6학년 학생<br>나. 운영 프로그램 명칭: 겨울방학 중 배움성장교실<br>다. 운영 시간: 매주 월~금(주 5일, 9:00-12:00) ※등, 하교는 보호자 동행하에 실시<br>라. 운영 장소: 본교 교장 관사 1개 방 활용(책, 걸상 구비되어 있음)<br>마. 운영 강사: 기초학력지도 강사 1명 공개채용하여 학생지도 및 관리예정<br>바. 돌봄연계 프로그램으로 소수 맞춤 학습이 되도록 한다.<br>사. 점심 급식은 운영하지 않으며, <u>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한다.</u><br>- 발열체크 및 마스크 상시착용 |
|                    | <p><b>2. 운영 대상 학생 모집 (*2~3순위는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함.)</b></p> -1순위: 본교 돌봄교실 학생<br>-2순위: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진단평가결과 1-3차에 걸쳐서 기초부진 학생으로 판별난 경우<br>-3순위: 기초수급 대상자, 한부모, 조손가정 담임교사가 판단하기에 보충지도가 꼭 필요하여 추천받은 학생   |
|                    | <p><b>3. 학습 지원 계획</b></p> 1) 경기도 기초학력 진단 보정시스템의 개별화 보정프로그램 자료 제공<br>2) 국어, 수학 교재 활용: 학년에 맞는 학교 자체 편집 또는 만든 교재제공<br>(수학익힘 1-2학기 다시 되풀기, 학생 수준에 맞는 문제 제공), 시중에 판매되는 교재 제공<br>▶ 1-2학년(한글쓰기, 독해, 수학), 3-6학년(한글쓰기-받아쓰기, 독해, 수학, 영어)  |
|                    | <p><b>4. 방역 및 안전지도 계획</b></p> 1) 방역 계획<br>가) 강사, 학생 모두 등교 전 자가진단앱 실시- 수업 전.중.후 창문 환기<br>나) 등교 시 강사가 학생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손소독 지도<br>(체온계 및 소독티슈, 손소독제, 여분의 마스크 상시 구비)<br>2) 안전 지도 계획: 등하교 귀가는 학부모 인솔 또는 직접 도보하여 귀가 원칙<br>비상연락망 수립하여 학생 및 부모와 연락되도록 함. <u>학교 통학버스 미운영</u>   |
| <b>4. 기 타</b>      | <p><b>4. 예산 활용 계획:</b> 강사비, 교재구입비는 본교 학력향상(교과보충지도) 예산에서 지원 예정<br/>                 ※ 위 예산 활용 방안은 운영 상황 및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p>  |
| <b>5. 불 임</b>      | 없음  |

## 2022학년도 해피노곡 스키캠프 체험학습 운영 계획(안)

|          |   |
|----------|---|
| 안건<br>번호 | 4 |
|----------|---|

|         |                |
|---------|----------------|
| 제출년월일 : | 2022년 11월 28 일 |
| 제 출 자 : | 포천노곡초등학교장      |
| 담 당 자 : | 교육과정부 김철       |

| <b>1.제안이유</b>  | 전교생 동계 스포츠 체험으로 '사람, 자연과의 어울림' 학교 교육과정 실현<br>교육과정 연계 체험학습으로 여가와 레저교육의 장 제공  |   |   |         |    |         |   |   |   |
|----------------|---|---|---|---------|----|---------|---|---|---|
| <b>2.관련근거</b>  | 가. 2022 포천노곡초 학교교육과정<br>나.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포천노곡초-2824,2022.3.23.)   |   |   |         |    |         |   |   |   |
| <b>3. 주요내용</b> | <p>1. 2022학년도 2학기 스키체험학습 운영 계획 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학년</th> <th style="width: 15%;">날짜</th> <th style="width: 55%;">체험학습 내용</th> <th style="width: 20%;">예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교<br/>생</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2. 12. 22. (목)<br/><b>08:00~17:00</b></td> <td>                     ·주제: 동계 스포츠 체험 스키캠프<br/>                     ·장소: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강원도 춘천시)<br/>                     ·대상: 포천노곡초 1-6학년 학생 51명<br/>                     ·시간: 8시 30분 - 17시 30분(*오전 스쿨버스 시간<br/>                     앞당겨 운행예정, 탑승시각은 추후 안내)<br/>                     ·이동방법: 전세버스 2대<br/>                     ·점심식사: 스키장에 있는 단체 식당 이용예정<br/>                     ·내용: 출발 전 안전교육 및 코로나 예방교육 실시,<br/>                     도착해서 스키대여 및 오전강습, 점심식사,<br/>                     오후강습 실시<br/>                     ★ 귀가는 학교에 전세버스 도착 이후에 학부모님 또는<br/>                     친구 부모님차량으로 귀가함. (가정통신문, 학교종이<br/>                     앱으로 사전조사 예정)                 </td> <td style="text-align: center;">                     포천시<br/>                     미래인<br/>                     재사업<br/>                     ,<br/>                     특색있<br/>                     는<br/>                     학교만<br/>                     들기<br/>                     예산                 </td> </tr> </tbody> </table> <p>2. 미참여 학생 지도계획<br/>                     - 미참여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가정학습 또는<br/>                     참관수업 실시</p> <p>3. 예산 사용 계획<br/>                     -체험비(강습비, 스키렌탈, 식비) : 학생 1인당 85,000원 * 51명 = 4,335,000원<br/>                     -간식(생수, 초코바) 및 보험료: 253,300원 예정<br/>                     -버스임차비: 700,000원*2대=1,400,000원<br/> <b>-수익자 부담금 없음</b></p> | 학년  | 날짜  | 체험학습 내용 | 예산 | 전교<br>생 | 2022. 12. 22. (목)<br><b>08:00~17:00</b> | ·주제: 동계 스포츠 체험 스키캠프<br>·장소: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강원도 춘천시)<br>·대상: 포천노곡초 1-6학년 학생 51명<br>·시간: 8시 30분 - 17시 30분(*오전 스쿨버스 시간<br>앞당겨 운행예정, 탑승시각은 추후 안내)<br>·이동방법: 전세버스 2대<br>·점심식사: 스키장에 있는 단체 식당 이용예정<br>·내용: 출발 전 안전교육 및 코로나 예방교육 실시,<br>도착해서 스키대여 및 오전강습, 점심식사,<br>오후강습 실시<br>★ 귀가는 학교에 전세버스 도착 이후에 학부모님 또는<br>친구 부모님차량으로 귀가함. (가정통신문, 학교종이<br>앱으로 사전조사 예정) | 포천시<br>미래인<br>재사업<br>,<br>특색있<br>는<br>학교만<br>들기<br>예산 |
| 학년             | 날짜  | 체험학습 내용   | 예산  |         |    |         |   |   |   |
| 전교<br>생        | 2022. 12. 22. (목)<br><b>08:00~17:00</b>   | ·주제: 동계 스포츠 체험 스키캠프<br>·장소: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강원도 춘천시)<br>·대상: 포천노곡초 1-6학년 학생 51명<br>·시간: 8시 30분 - 17시 30분(*오전 스쿨버스 시간<br>앞당겨 운행예정, 탑승시각은 추후 안내)<br>·이동방법: 전세버스 2대<br>·점심식사: 스키장에 있는 단체 식당 이용예정<br>·내용: 출발 전 안전교육 및 코로나 예방교육 실시,<br>도착해서 스키대여 및 오전강습, 점심식사,<br>오후강습 실시<br>★ 귀가는 학교에 전세버스 도착 이후에 학부모님 또는<br>친구 부모님차량으로 귀가함. (가정통신문, 학교종이<br>앱으로 사전조사 예정) | 포천시<br>미래인<br>재사업<br>,<br>특색있<br>는<br>학교만<br>들기<br>예산 |         |    |         |   |   |   |
| <b>4. 기 타</b>  |   |   |   |         |    |         |   |   |   |
| <b>5. 붙임</b>   |   |   |   |         |    |         |   |   |   |

## 2022학년도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계획(안)

|          |   |
|----------|---|
| 안건<br>번호 | 5 |
|----------|---|

|         |                |
|---------|----------------|
| 제출년월일 : | 2022 년 11월28 일 |
| 제 출 자 : | 포천노곡초등학교장      |
| 담 당 자 : | 돌봄전담사 김경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1.제안이유</b>               | 가. 방학기간 중 맞벌이 및 취약계층 가정의 돌봄수요 문제 해결<br>나. 가정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휴식<br>다.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잠재력과 창의성 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2.관련근거</b>               | 가. 2022 경기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br>나. 2022학년도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관련 수요조사 안내 (포천노곡초-10076, 2022.1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3. 주요내용</b>              | <p><b>1. 운영 개요</b></p> 가. 돌봄교실 운영기간 : 2023년 1월 5일(목) ~ 2023년 2월 24일(금), 30일간<br>(2월 27일(월)-28일(화)는 새학년 준비기간으로 미운영함.)<br>나. 돌봄교실 겨울방학 기간: <b>2023년 1월 16일(월)~1월 20일(금)</b><br>다. 운영시간: 월~금, 08:30~16:30<br>라. 돌봄장소 : 교내 교장관사<br>마. 돌봄대상 : 초등돌봄교실 대상학생(1~2학년 학생 중 맞벌이 가정 및 취약계층)<br>바. 교육프로그램 : 자녀의 안전한 돌봄, <b>기초학력 (외부강사) 과제지도</b> ,<br>교과보충학습, 특별활동 미술수업(외부강사)<br>사. 지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전담사: 월~금(5일), 08:30~16:30</li> <li>■ 기초학력 강사: 외부강사 채용 후 확정</li> <li>■ 특별활동미술강사: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강사 연계운영</li> </ul> <p style="color: red;"><b>아. 겨울방학 급·간식 수요조사 결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급식: 개인 도시락 지참</b></li> <li>■ <b>간식: 개인 지참</b></li> </ul> <p><b>2. 운영시간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08:30~10:00</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열체크 및 아이들 맞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12:00<br/>(주제활동 120 ')</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요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화요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요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요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금요일</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초학력</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초학력</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초학력</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초학력</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초학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00~13:00 (60 ')</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점심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3:00~13:40 (40 ')</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별활동 미술</td> <td style="text-align: center;">과제학습</td> <td style="text-align: center;">종이접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통놀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별활동 미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3:40~14:20 (40 ')</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별활동 미술</td> <td style="text-align: center;">색칠공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블럭놀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DVD시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특별활동 미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4:20~16:00(100 ')</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과제학습 및 휴식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6:00~16:30 (30 ')</td>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자유선택활동 및 정리 / 안전 및 귀가 지도</td> </tr> </table> <p>※ 학교 사정에 따라서 시간표 조정 될 수 있음.<br/>                 ※ 2월27일(월)-2월28일(화)는 돌봄교실 정리기간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p> <p><b>3. 학생안전대책</b></p> | 08:30~10:00 | 열체크 및 아이들 맞이 |       |         |  |  | 10:00~12:00<br>(주제활동 120 ')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기초학력 | 기초학력 | 기초학력 | 기초학력 | 기초학력 | 12:00~13:00 (60 ') | 점심시간 |  |  |  |  | 13:00~13:40 (40 ') | 특별활동 미술 | 과제학습 | 종이접기 | 전통놀이 | 특별활동 미술 | 13:40~14:20 (40 ') | 특별활동 미술 | 색칠공부 | 블럭놀이 | DVD시청 | 특별활동 미술 | 14:20~16:00(100 ') | 과제학습 및 휴식시간 |  |  |  |  | 16:00~16:30 (30 ') | 자유선택활동 및 정리 / 안전 및 귀가 지도 |  |  |  |  |
| 08:30~10:00                 | 열체크 및 아이들 맞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12:00<br>(주제활동 120 ')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초학력   | 기초학력        | 기초학력         | 기초학력  | 기초학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0~13:00 (60 ')          | 점심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00~13:40 (40 ')          | 특별활동 미술  | 과제학습        | 종이접기         | 전통놀이  | 특별활동 미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40~14:20 (40 ')          | 특별활동 미술  | 색칠공부        | 블럭놀이         | DVD시청 | 특별활동 미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0~16:00(100 ')          | 과제학습 및 휴식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0~16:30 (30 ')          | 자유선택활동 및 정리 / 안전 및 귀가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가. 안전 관리 시스템 정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양한 인력 활용 교내·외 수시 순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원 등 다양한 인력 활용 취약 지역 등 교내·외 수시 순찰 강화</li> <li>- 방학 중 학교 개방 시간 동안 학교 건물 뒤편, 주차장, 교사 내 화장실, 특별교실 등 학교 안팎 순찰 집중 강화</li> <li>- 학교 인근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소방관서 등의 협조로 순찰 강화</li> <li>- 방학 중 학교 개방 시간 동안 학교 주변 순찰 강화</li> </ul> </li> <li>2)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안전을 위한 학교 주변 시설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주출입문 개폐시 학교 내 CCTV 작동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등</li> </ul> </li> <li>3) 초등돌봄교실 비상벨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무실·행정실·당직실·학교안전지킴이 등이 서로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여 안전강화</li> </ul> </li> </ol> <p>나. 학생 관리 및 하교 지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돌봄교실 참여 학생 관리 및 하교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출결 확인 및 결석 시 학부모를 통한 결석 원인 파악</li> </ul> </li> <li>2) 귀가 시 학부모(보호자, 대리동행인 등) 등에게 인수·인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어려울 경우 대리동행인과 귀가 가능</li> <li>- 정해진 시간 외(중도귀가) 귀가 요구 시에는 반드시 학부모와 사전 연락</li> </ul> </li> <li>3) 등·하교 차량 운행 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하교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인솔자가 동승하여 교통안전 지도</li> </ul> </li> </ol> <p>다. 교육 활동 안전 확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실내 활동) 교실, 복도 및 계단, 화장실에서 지켜야 할 안전 질서 생활화</li> <li>2) (실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진행시 실외활동 없음</li> </ul> </li> </ol> <p>라. 안전사고 예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학 중 교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활동 적극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원 지도, 사각지대 순찰 강화</li> </ul> </li> <li>2) 고위험학생(폭력, 중독, 가출), 위기학생(부모방치,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li> </ol> <p>파악 및 생활지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학교 외부인 출입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인 방문증 패용 의무화 및 외부인과 구분하기 위한 명찰 착용</li> </ul> </li> <li>4) 기타 안전사고 대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간식 제공 시 위생관리(식중독 예방) 철저, 보존식 보관</li> <li>- 학생들에게 안전한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자체 조리는 지양하고, 식품위생 법령상 적합한 업체의 완제품 제공</li> <li>- 전염병 발생이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기</li> <li>- 학생의 특이 체질이나 질병 유무를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li> <li>- 학교 자체 안전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학생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수정하여 비치·활용</li> <li>-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인근 병원, 응급처치병원 등의 기관별 전화번호, 기관별담당자, 소재지 위치 등이 등록된 장부 비치</li> </ul> </li> </ol> |
| <b>4. 기타</b> | ※ 위 예산 활용 방안은 운영 상황 및 학교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 <b>5. 붙임</b> | 없음   |



## 2022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          |   |
|----------|---|
| 안건<br>번호 | 6 |
|----------|---|

|         |               |
|---------|---------------|
| 제출년월일 : | 2022년 11월 16일 |
| 제 출 자 : | 포천노곡초등학교장     |
| 담 당 자 : | 교무혁신부 이승희     |

|                |  |
|----------------|--|
| <b>1.제안이유</b>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대통령령 제32883호)<br/>-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책무성 강화</li> <li>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학교규칙 제·개정)</li> <li>3. 출결 처리 사항(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의거)</li> </ol>   |
| <b>2.관련근거</b>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정과-26907(2022.11.1.)호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li> <li>2. 학교설립기획과-1079(2022.10.11.)호 학교규칙 표준안 개정<br/>(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확정)</li> </ol>   |
| <b>3. 주요내용</b>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정안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학업중단 예방 관련 사항 기재</li> <li>나. 학칙 개정 절차 수정</li> <li>다. 출결 처리 사항 추가</li> </ul> </li> <li>2. 개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대통령령 제32883호)</li> <li>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학교규칙 제·개정)</li> <li>다. 출결 처리 사항(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의거)</li> </ul> </li> </ol> |
| <b>4. 기타</b>   |  |
| <b>5. 붙임</b>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규대조표 1부</li> <li>2. 포천노곡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1부</li> </ol>  |

## □ 신규대비표

| 기존 내용   | 개정 내용   | 개정사유   |
|---|---|--|
|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br>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br>으로 한다.  |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br>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br>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br>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 누락   |
|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br>제11조(교육과정 편성·운영)<br>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br>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br>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br>제11조(교육과정 편성·운영)<br>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br>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br>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br>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br>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br>다.  | - 누락   |
| 신설  |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br>제14조(출결처리)<br><br>신설<br>(붙임 참고)   | - 생기부기재<br>요령 근거                                 |
| 신설  | 제6장 학업중단 예방<br>제17조(학업중단 숙려제)<br>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br>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한<br>다.<br>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br>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br>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br>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br>「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br>매뉴얼」에 따른다. | 초·중등 교<br>육법 시행령<br>제9조 제1<br>항(대통령령<br>제32883호) |
| 제10장 학생포상 및 징계<br>제36조(징계)<br>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br>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장 학생포상 및 징계<br>제36조(징계)<br>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br>사항은 포천노곡초학생생활인권규정에<br>따른다.<br>제37조(학생의 학교생활)<br>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br>활인권규정에 따른다.   | -용어 수정   |

| 기존 내용  | 개정 내용  | 개정사유                                  |
|--|--|---------------------------------------|
| <p>제11장 보칙</p> <p>제38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공립의 각급학교)</p> <p>① 학칙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한다. (*사립의 각급학교)</p> <p>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은 자문)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p>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p> <p>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p> | <p>제 12 장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p> <p>제41조 (학칙개정 절차)</p> <p>① 공(사)립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p> <p>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li> <li>2. 재직 교원의 과반수</li> <li>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li> <li>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li> <li>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li> </ol> <p>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p> <p>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p> |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학교규칙 제·개정)</p> |

# 포천노곡초등학교규칙 개정(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포천노곡초등학교의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포천노곡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어울림을 통해 행복한 자기 삶을 사는 어린이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포천노곡초등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성장로869번길 4 에 둔다

##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학년을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
3. 겨울방학
4. 학년말 방학
5.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휴무일

## 6. 학교장 재량휴업일

- ①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

### 제11조(교육과정 편성·운영)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 제12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간 교환학습(위탁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교외체험학습을 20일 이하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57일 범위 내에서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가정학습 및 그 외의 학습 형태를 모두 포함하여 57일 이내에서 허가한다.
-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

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취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

③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결정한다.

**제14조(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2. 미인정 결석
- 3. 기타 결석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5.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6.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구분 | 대상                    | 일수 |
|----|-----------------------|----|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3  |
|    |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7.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으로 처리하며 이의 경우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③ 지각·조퇴·결과

1.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④ 소속 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방송·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1.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 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출결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학생평가)**

-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수행평가로 실시한다.
-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6장 학업중단 예방

**제17조(학업중단 숙려제)**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고나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 제7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면제·유예

**제18조(입학자격)**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 아동으로 본교 통학 구역 관할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19조(입학시기)**

-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0조(입학방법)**

- ① 조기 입학은 본교의 학생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출입국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본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재취학)**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전·편입학)**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23조(귀국학생의 전·편입학)**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학년은 외국에서 수학한 전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학력인정에 대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한다.
- ③ 귀국학생,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가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④ 학생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및 인권 존중 차원에서 무호적자·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학구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등)만으로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유예·면제 등의 재취학·편입학)**

- ①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다시 학교를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 ② 유예 및 면제자 중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학년은 서류 심사를 거쳐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 ③ 학생 및 보호자가 학년을 다르게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제25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1.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발육부진
  2. 취학이 불가능한 불구·폐질 등
  3. 기타 학교장이 유예·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 ②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④ 유예 및 면제 시기는 입학할 학생은 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당해 2월말로 하고 재학생은 장기간 수업 결손 사유 발생 시의 학기 중에 한다.

**제26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독촉·경고 및 통보)

-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 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 ① 취학의무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포천노곡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30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 ①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 ⑤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31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9장 기타비용의 징수 등

제32조(기타비용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 제10장 학생포상 및 징계

### 제33조(학교생활인권규정)

-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4조(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 하며,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포천노곡초학생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⑥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제37조(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 제11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8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포천노곡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39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학부모회의 설치) ①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포천노곡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 12 장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 제41조 (학칙개정 절차)

① 공(사)립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장 보칙

~~제38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공립의 각급학교)~~

~~① 학칙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한다.(\*사립의 각급학교)~~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은 자문)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21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연간)운영계획 수립 심의(안)

|          |   |
|----------|---|
| 안건<br>번호 | 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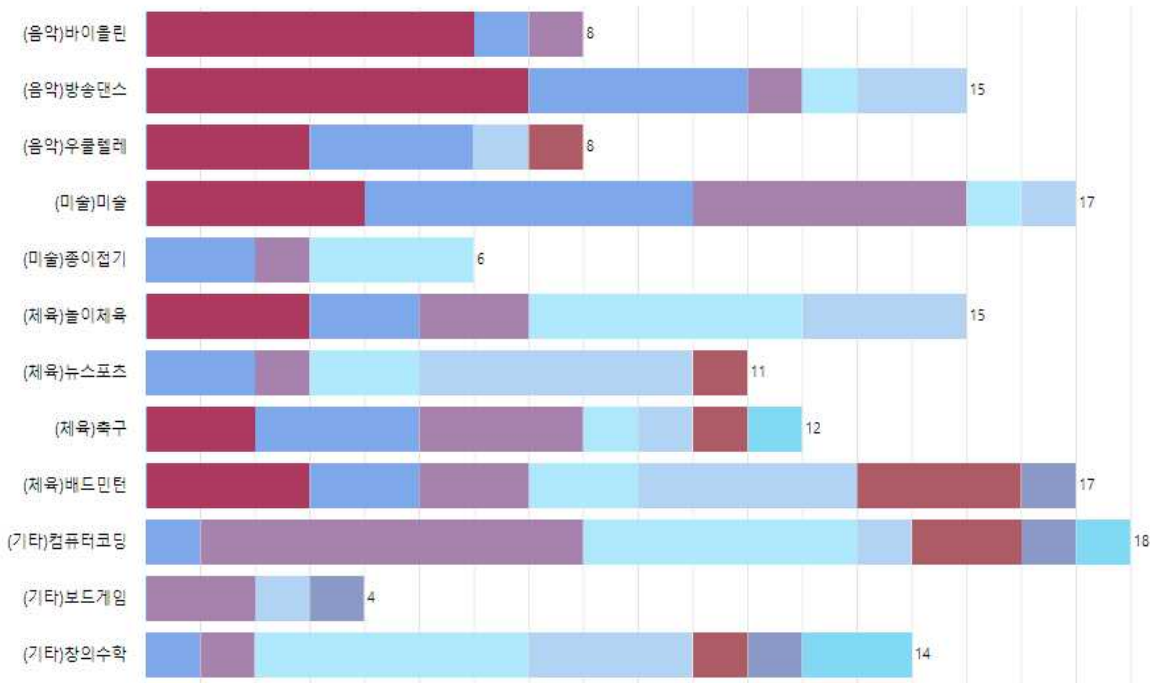
|         |               |
|---------|---------------|
| 제출년월일 : | 2022년 11월 28일 |
| 제 출 자 : | 포천노곡초등학교장     |
| 담 당 자 : | 방과후 이채희       |

| <b>1.제안이유</b>   | 2023학년도 포천노곡초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을 심의(자문) 받고자 함   |                                  |           |    |     |      |        |                 |    |                          |           |                |     |                                  |     |
|-----------------|---|----------------------------------|-----------|----|-----|------|--------|-----------------|----|--------------------------|-----------|----------------|-----|----------------------------------|-----|
| <b>2.관련근거</b>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   |                                  |           |    |     |      |        |                 |    |                          |           |                |     |                                  |     |
| <b>3. 주요내용</b>  | <p>1. 목적</p> <p>2. 운영 방향</p> <p>3.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p> <p>가. 운영기간 : 방학 미운영 / 돌봄교실별도 운영 계획</p> <p>나. 세부 실천 내용 : 특기적성프로그램 돌봄교실 연계운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자</th> <th style="text-align: center;">운영시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방학운영계획</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오후돌봄프로그램 (주 2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돌봄</td> <td style="text-align: center;">40/80분(1, 2차시)<br/>*2일 운영</td> <td style="text-align: center;">방학중 별도 계획</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방과후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td> <td style="text-align: center;">재학생</td> <td style="text-align: center;">평일: 13:20~16:10<br/>(1일 3~4차시 운영)</td> <td style="text-align: center;">미운영</td> </tr> </tbody> </table> <p>다. 개설 프로그램 및 운영: 수요조사 참고</p> <p>4. 강사 모집 및 계약</p> <p>가. 강사 모집: 일 정 (2022.12.9.~12.30)</p> <p>나. 계약절차</p> <p>다. 계약해지</p> <p>5. 강사 선정 심사 계획</p> <p>가. 평가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통합위원 4명(내부2명: 외부2명)</p> <p>나. 세부 계획: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최종합격</p> <p>6. 회계 관리: 지원금 사용 여부 심의</p> <p>7.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p> <p>8. 홍보</p> <p>9. 평가</p> |                                  |           | 구분 | 대상자 | 운영시간 | 방학운영계획 | 오후돌봄프로그램 (주 2일) | 돌봄 | 40/80분(1, 2차시)<br>*2일 운영 | 방학중 별도 계획 | 방과후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 | 재학생 | 평일: 13:20~16:10<br>(1일 3~4차시 운영) | 미운영 |
| 구분              | 대상자   | 운영시간                             | 방학운영계획    |    |     |      |        |                 |    |                          |           |                |     |                                  |     |
| 오후돌봄프로그램 (주 2일) | 돌봄  | 40/80분(1, 2차시)<br>*2일 운영         | 방학중 별도 계획 |    |     |      |        |                 |    |                          |           |                |     |                                  |     |
| 방과후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  | 재학생   | 평일: 13:20~16:10<br>(1일 3~4차시 운영) | 미운영       |    |     |      |        |                 |    |                          |           |                |     |                                  |     |
| <b>4. 기 타</b>   | ○ 본교 소규모(60인이하)학교로 방과후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시엔 오후 돌봄(학생)과 통합 운영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돌봄 운영계획서에도 동일 명시함.)  |                                  |           |    |     |      |        |                 |    |                          |           |                |     |                                  |     |
| <b>5. 붙임</b>    | 2023학년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수용조사 결과1부.   |                                  |           |    |     |      |        |                 |    |                          |           |                |     |                                  |     |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수요조사 안내

복수응답

Q1.본 수요조사 결과는 강좌개설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신중을 기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28명 응답)



### 2. 개설희망강좌: 아동요리, 밴드부, 실험과학, 바둑, 주산, 속독, 레진아트

| 2020 (수)<br>11월기준 |     |    | 2021 (수)<br>코로나로인한 재계약 |     |    | 2022  |     |    |
|-------------------|-----|----|------------------------|-----|----|-------|-----|----|
| 토탈공예              | 1-2 | 12 | 토탈공예                   | 1-2 | 17 | 바이올린  | 1-2 | 16 |
|                   | 3-6 | 13 |                        | 3-6 | 4  |       | 3-6 | 4  |
| 독서논술              | 1-2 | 8  | 독서논술                   | 1-2 | 4  | 방송댄스  | 1-2 | 17 |
|                   | 3-6 | 9  |                        | 3-6 | 3  |       | 3-6 | 2  |
| 바이올린              | 1-2 | 4  | 컴퓨터코딩                  | 1-2 | 8  | 보드게임  | 1-2 | 17 |
|                   | 3-6 | 2  |                        | 3-6 | 8  |       | 3-6 | 16 |
| 미술                | 1-2 | 9  | 미술                     | 1-2 | 8  | 미술    | 1-2 | 20 |
|                   | 3-6 | 11 |                        | 3-6 | 5  |       | 3-6 | 14 |
| 방송댄스              | 1-2 | 5  | 방송댄스                   | 1-2 | 18 | 컴퓨터코딩 | 1-2 | 20 |
|                   | 3-6 | 5  |                        | 3-6 | 4  |       | 3-6 | 13 |

## 2022학년도 겨울 영어캠프 운영계획(안)

|          |   |
|----------|---|
| 안건<br>번호 | 8 |
|----------|---|

|         |              |
|---------|--------------|
| 제출년월일 : | 2022년 12월 7일 |
| 제 출 자 : | 포천노곡초등학교장    |
| 담 당 자 : | 교육과정부 강다운    |

|                |  |                          |
|----------------|--|--------------------------|
| <b>1.제안이유</b>  | 2022 영어캠프 운영 소개  |                          |
| <b>2.관련근거</b>  | 포천노곡초등학교-3579. 2022학년도 외국어교육내실화및 영어교육격차해소 프로젝트 사업 운영 예산 교부 알림  |                          |
| <b>3. 주요내용</b> | 1. 일시: 2023. 1.2(월)-1.3(화) (총 2일)<br>2. 대상: 시간: 본교 3-6학년 학생<br>3. 시간: -1.2(월) : 1시 20분- 3시 30분 (3,4학년 대상)<br>-1.3(화) : 1시 20분- 3시 30분 (5,6학년 대상)<br>4. 장소: 영어실<br>5. 내용: 영어에 대한 친숙함과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                          |
|                | 날짜   | 시간                       |
|                | 1월 2일<br>(월)   | 13:20-15:30              |
|                | 1월 3일<br>(화)   | 13:20-15:30              |
|                | 활동내용   |                          |
|                | Introduction, Warm up game   |                          |
|                | Story time, Art&Craft  |                          |
|                | English quiz& Closing  |                          |
|                | Introduction, Warm up game   |                          |
|                | Story time, Art&Craft  |                          |
|                | English quiz& Closing  |                          |
|                | 6. 예산 사용 계획  |                          |
|                | 항목   | 산출내역                     |
|                | 겨울영어캠프   | - Art&Craft 재료비: 300,000 |
|                | 운영비  | - 학습자료 구입비: 200,000      |
|                | (교육청 교부)   | - 간식비: 100,000           |
|                | 합 계  |                          |
|                |  | 600,000                  |
|                | 7. 담당교사: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영어전담교사   |                          |
| <b>4. 기 타</b>  |  |                          |
| <b>5. 붙임</b>   |  |                          |



**기타1** 2022학년도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계획(안)에 의거 농어촌지원금 잔액을 수용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1. 관련: 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과-9832(2022.3.29.)
2. 위 호와 관련하여 농어촌지원금 7%이내 수용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3. 구입물품: 방역물품
4. 금액: 64,000원

#### IV.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집행 유의사항

##### 1.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102쪽)

- ① 수용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통해 강사료의 **7%**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시설 신·증축 등 환경개선 사업 및 학교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수용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③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방역물품** 및 기타 소모품 구입비, 학생 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방과후학교 업무 보조인력 인건비(기타 인건비성 항목은 지출 금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받은 계획에 따라 집행한다.